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70
----------	-------

발의연월일 : 2024. 1. 12.

발 의 자 : 김희곤 · 최춘식 · 태영호
김용판 · 하영제 · 박정하
이명수 · 정운천 · 지성호
박성민 · 백종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서는 “사업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합의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그 개별합의 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절됨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예규상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공동행위의 수(數)는 어

땡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행위의 종기(終期)가 달라짐에 따라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에 차이가 생기고 행정처분의 수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부당한”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부당한”으로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 있다면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 있다면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u> ⑦ <u>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부당한</u> ----- ----- -----.
⑥ <u>부당한</u>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